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1740
등록일자	2015.1.22.
결재일자	2015.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구청장
이미용	이영범	신오식	문경수	주윤중	01/23 신연희
협조자	38세금징수팀장 김회동				

『세입목표 달성 및 우리구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 2015년 세외수입 (일반회계) 체납징수 종합 계획

추진기간 : 2015. 1월 ~ 2015. 12월

2015년 징수목표액

(단위:억원)

	구 세외수입		시 세외수입		비고
	2014년 징수	2015년 목표	2014년 징수	2015년 목표	
계	852	974	178	178	
현년도	808	923	175	175	세외수입부서
과년도	44	51	3	3	세무관리과

추진방향

- 세목별 징수목표액 진도율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세입징수 관리
- 특별 정리기간 연중 운영 및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 전개
- 38체납기동대(T/F팀)의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로 구세입 증대

2015. 1. 22.

강 남 구  
(세 무 관 리 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p>· 강남구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9조2항,10항</p>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p>· 추진경위 : 2015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p>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p>·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p>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p>· 강남구 재정확충</p>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p>① 관련부서 협조 ----- ( O )</p> <p>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p> <p>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p> <p>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p> <p>⑤ 시장조사 ----- ( )</p> <p>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p> <p>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p> <p>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p> <p>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p>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타 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p>· 해당 사항 없음</p>
전문가 자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p>· 해당 사항 없음</p>

## 2015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 종합 계획

우리구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하고자 함

### I 추진개요

#### □ 2015년 징수목표액

(단위:억원)

구 분	구 세외수입		시 세외수입		비고
	2014년 징수	2015년 목표	2014년 징수	2015년 목표	
계	852	974	178	178	
현년도	808	923	175	175	세외수입부서
과년도	44	51	3	3	세무관리과

#### □ 추진기간 : 2015. 1월 ~ 2015. 12월

#### □ 추진방향

- 세목별 징수목표액 진도율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세입징수 관리
- 특별 정리기간 연중운영 및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 전개
- 38체납기동대T/F팀의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로 구세입 증대

####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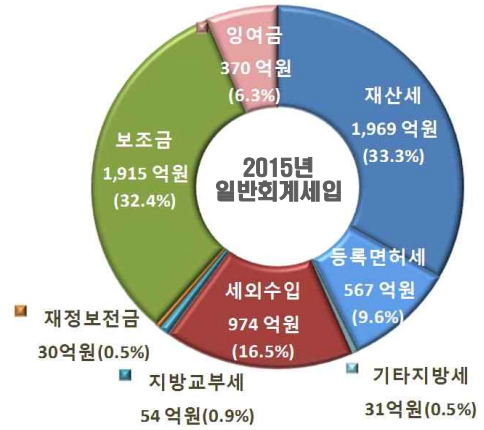
- 2015. 1월 : 납세자 번호 오류 등 과세자료의 정확한 자료 정비
- 2015. 3월 : 2014년 부과분 중 체납에 대한 징수업무 세무관리과 이관
- 년중 수시 : 체납고지서 및 납부 촉구 안내문 통합 발송

## II 세외수입현황

### □ 구(區)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분	205년 (A)	2014년		증감액 (A-B)
		당초	최종(B)	
총 계	627,166	577,243	620,648	6,518 ↑
일반회계	590,593	537,437	580,618	9,975 ↑
특별회계	36,573	39,806	40,030	3,457 ↓



### □ 구(區) 일반회계 년도별 세입예산 증감현황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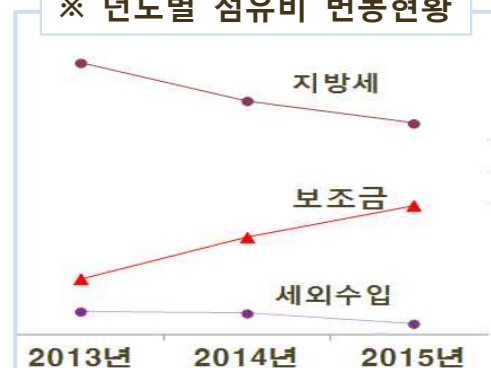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가율	
계	590,593	580,618	1.8 ↑	
지방세	계	256,726	249,714	2.8 ↑
	재산세	196,890	190,659	3.3 ↑
	등록면허세	56,705	56,284	0.7 ↑
	기타지방세	3,131	2,771	13.0 ↑
세외수입	97,372	95,953	1.5 ↑	
지방교부세	5,373	5,000	6.0 ↑	
재정보전금	3,000	3,722	-19.4 ↓	
보조금	191,122	160,279	19.3 ↑	
잉여금	37,000	65,881	-43.8 ↓	

### □ 구(區) 일반회계 세입예산별 점유율

(단위:백만원,%)



#### ※ 년도별 점유비 변동현황



## □ 구(區)세외수입 년도별 세입결산 현황

\* 진도율 산정시 이월금 제외

(단위:백만원,%)

구 분		2015 세입목표	2014.12월			2013년 결산			
			세입목표	징수액	진도율	세입목표	징수액	진도율	
총 계		97,372	95,953	98,075	102.2	91,328	110,520	121.0	
세 외 수 입	경상적	소계	82,368	81,122	80,814	99.6	75,205	77,903	103.6
		재산임대수입	293	337	229	67.8	214	481	224.8
		사용료수입	20,282	19,851	18,140	91.4	19,545	17,522	89.6
		수수료수입	11,064	11,862	10,957	92.4	7,014	10,290	146.7
		사업수입	1,674	1,536	905	58.9	605	797	131.7
		징수교부금수입	47,435	45,902	48,428	105.5	46,208	47,014	101.7
		이자수입	1,620	1,634	2,155	131.8	1,620	1,799	111.0
	임시적	소계	15,004	14,831	17,261	116.4	16,123	32,617	202.3
		재산매각수입	2,000	2,000		0.0	1,842	11,054	600.1
		부담금/전입금	82	370	400	108.1		650	
		기타수입	7,866	6,866	12,421	180.9	8,859	15,832	178.7
		지난년도수입	5,056	5,595	4,440	79.4	5,422	5,081	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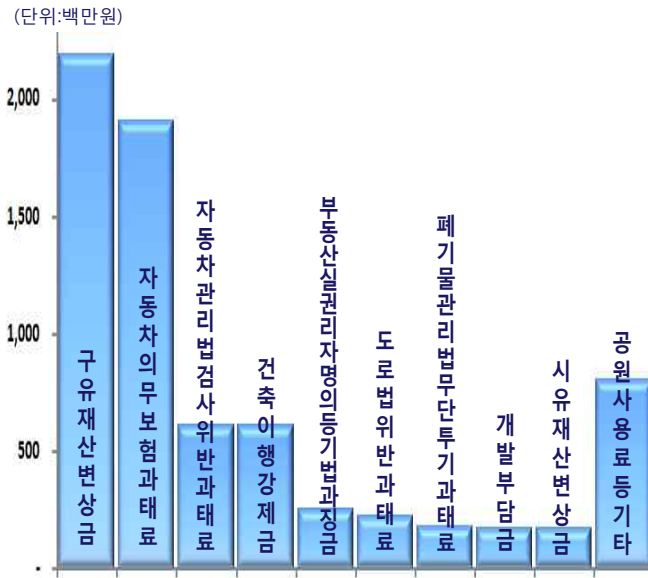
## □ 2014년도 구(區)세외수입 부서별 부과·징수현황

※ 2014.12.31. 현재

(단위:백만원)

부서명	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징수율 (b/a)	계		압류		압류율 (d/c)	
						건수(c)	금액	건수(d)	금액		
계	60,922	215,113	46,501	208,011	96.7	14,421	7,102	6,279	2,358	43.5	
안전건설과	3,325	13,927	2,745	11,466	82.3	580	2,461	17	6	2.9	
자동차민원과	11,066	2,566	5,670	580	22.6	5,396	1,986	3,043	1,236	56.4	
주차관리과	14,437	1,407	10,417	700	49.7	4,020	707	2,769	527	68.9	
부동산정보과	133	1,153	123	694	60.2	10	459	2	187	20.0	
건축과	243	1,025	230	679	66.2	13	346	1	235	7.7	
주택과	275	934	154	592	63.4	121	342	9	67	7.4	
청소행정과	19,784	11,089	16,289	10,889	98.2	3,495	200	422	24	12.1	
공원녹지과	161	1,090	154	953	87.4	7	137	1	60	14.3	
보건과	1,373	199	958	155	77.7	415	44	0	0	0.0	
재무과	2,204	121,511	2,201	121,473	100.0	3	38	0	0	0.0	
지역경제과	81	141	65	113	80.0	16	28	0	0	0.0	
위생과외	7,840	60,071	7,495	59,717	99.4	345	354	15	16	4.3	

## 2014년도 구(區)세외수입 세목별 체납현황



세목명	건수	금액	부과부서
계	14,421	7,102	
구유재산변상금	9	2,187	건설관리과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5,129	1,901	자동차민원과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2,899	609	주차관리과
건축이행강제금	60	610	건축과, 주택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3	252	부동산정보과
도로법위반과태료	490	219	건설관리과
폐기물관리법(무단투기)과태료	3,410	180	청소행정과
개발부담금	1	168	부동산정보과
시유재산변상금	139	170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원사용료외 기타세목	2,281	806	공원녹지과외

- 구유재산변상금은 통신사(엘지유플러스 등 5개사)의 2009년~2014년까지 5개년도 지중통신관 점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현재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 체납처분은 법원판결로 집행정지됨
- 2014년 부과부서 세목별 부과·징수현황 별첨

## 시(市)세외수입 년도별 세입현황

※ 2014.12.31. 현재

(단위:백만원,%)

예산명		2014년12월			2013년 결산			2012년 결산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부과	징수	징수율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계	23,141	17,864	77.2	18,397	13,046	70.9	25,583	20,783	81.2	
	경상적	소계	12,451	12,280	98.6	12,184	12,014	99.0	12,184	12,014	98.6
		재산임대수입	84	84	100.0	22	22	100.0	22	22	100.0
		사용료수입	12,363	12,192	98.6	11,882	11,768	99.0	12,158	11,989	98.6
		수수료수입	4	4	100.0	7	7	100.0	3	3	100.0
		소계	10,690	5,584	52.2	6,213	1,032	16.6	13,399	8,769	65.4
	임시적	재산매각수입	-	-	-	-	-	-	72	72	100.0
		부담금	4,670	4,670	100.0	235	235	100.0	6,923	6,923	100.0
		기타수입	866	599	69.1	1,001	566	63.0	1,736	1,094	63.0
		지난년도수입	5,154	315	6.1	4,977	231	4.6	4,667	679	14.6
소계		10,690	5,584	52.2	6,213	1,032	16.6	13,399	8,769	65.4	

## □ 2014년도 시(市)세외수입 부서별 부과·징수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부과부서	예산과목	부과		수납		결손		미수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세외수입 (일반회계)	총계		4,844	23,141	3,449	17,864	78	378	1,317	4,899	77.2	
	현년도	현년도계		3,679	17,988	3,382	17,549	-	-	297	438	97.6
		건설관리과	계	2,793	12,526	2,685	12,342			108	184	98.5
			변상금	247	257	229	243			18	14	94.6
			사용료	2,546	12,269	2,456	12,099			90	170	98.6
		주택과	계	74	4,781	3	4,670			71	111	97.7
			변상금	71	111	-	-			71	111	0.0
			부담금	3	4,670	3	4,670			-	-	100.0
		도시계획과	계	69	143	1	0.07			68	143	0.0
			사용료	1	0.07	1	0.07			-	-	100.0
			변상금	68	143	-	-			68	143	0.0
			부담금	-	-	-	-			-	-	-
		도로관리과	도로사용료	516	156	487	155			29	1	99.4
		기타부서	기타잡수입외	227	381	206	382			21	1	
		지난년도수입			1,165	5,154	67	315	78	378	1,020	4,461

## Ⅲ 체납 징수 계획

### □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 : 5,056백만원

○ 2014.12.31.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2015년	2014.12월			2013.12월			비고
		징수목표	징수액	진도율	징수목표	징수액	진도율	
계	5,056	5,595	4,440	79.4	5,421	5,080	93.7	
세외수입팀	2,356	2,602	2,402	92.3	2,521	2,764	109.6	
38체납기동대	2,700	2,993	2,038	68.1	2,900	2,316	80.0	

###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현황 (2014.12월말 현재)

- 구 세외수입 : 177,916건 71,345백만원
- 시 세외수입 : 1,021건 4,461백만원

## □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추적으로 체납처분 총력추진
  - 체납자 소유부동산 재산조회 후 압류 및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 체납자 소유 자동차 차량등록 여부 조회 후 즉시 압류
  - 법원 부동산 경매 배당금 압류 추진
  - 주거은행 예금압류 및 추심
  - 카드가맹점 매출채권 전수조사 및 압류
  - 부과 후 사망자, 폐업 및 청산법인 등 과세자료 정비
- 고액체납자 38체납기동대TF팀 체납징수전담반 활용 징수활동 강화(현장중심 활동)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역별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실시
  - 무재산 고액체납자 거주실태를 조사하여 가택수색 등을 통해 동산(현금, 보석, 그림 등) 현장 압류 및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 징수
  - 위장 이혼 등 사해행위 집중추적을 통한 체납징수 등
- 전체 부동산 압류 체납자에 대한 공매예고안내문 분기별 1회 발송
-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압류
  - 5백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법원공탁금 전수조사
  - 공탁종류 중 체납자가 피공탁자이면서 변제인 경우 즉시 추심

## □ 시효결손으로 체납 정리율 제고

-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에 대한 세외수입종합시스템상 압류자료를 일제 정비 하여 미압류, 말소차량 등에 대한 시효결손 처리로 정리율 제고

## □ 체납세액 정리기간 연중 운영

- 매월 체납고지서 또는 각종 채권압류 예고문 등 연중 송달
- 미압류 체납자에 대해 수시로 차적조회 등 재산조회 후 즉시 압류
- 완납된 압류자료 및 체납내역 없는 압류자료 매월 정비
- 납세자번호 오류, 부과 미결의, 환급처리, 지급등록 등 미처리 자료 정비
- 사망자, 폐업 및 청산 법인에 대한 세외수입징수시스템 자료관리



## □ 세외수입 체납징수 월별 세부계획

월별	세 부 추 진 계 획	비 고
1월	▶ 2015년 징수기본계획수립 ▶ 2014년 부과분 체납 징수업무 이관 준비	
2월	▶ 고액체납자 실태조사(수도권 거주자) ▶ 체납법인 현황조사 및 체납자료 정리	
3월	▶ 세외수입(일반회계) 지난년도(2014년 부과분) 체납분 이관 ▶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소송진행 사항 특별관리	
4월	▶ 고액체납자 동산압류 예고문 발송 및 현장조사	
5월	▶ 세외수입 분납자 일제정리 및 문자발송	
6월	▶ 주거대출은행 예금압류 및 추심	
7월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압류	
8월~ 9월	▶ 부동산 공매예고 및 공매 실익분석	
10월	▶ 법원 부동산 경매 배당금 압류 추진	
11월 ~12월	▶ 카드가맹점 매출채권 전수조사 및 압류	
매월	▶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압류해제 ▶ 매월 징수 및 정리실적 분석	
수시	▶ 체납고지서, 납부촉구안내문 및 문자 발송 ▶ 특별징수계획에 의거 징수활동 ▶ 세외수입체납자 소유부동산조회(3월,6월,9월,12월)	

## IV 행정사항

### □ 세외수입 부과·독촉·서류송달·채권확보 철저 ----- 실·과·동

- 세외수입부과 시 부과근거, 납세자, 물건 정보 등을 정확히 명시하고, 징수결의 후 고지서를 교부 또는 등기송달하고 해당 고지서 송달근거 확보

⇒ 2015.3월중 2014년 세외수입 체납이관시 건별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송달근거 반드시 제출.

※ 세외수입시스템 전산입력 필

- 세외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최초 1회분 독촉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의 전제 요건을 구비한 뒤 조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

⇒ 독촉없는 압류처분 무효

### □ 매월 징수 및 정리실적 분석 ----- 부서 및 세외수입팀

- 부서별,세목별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낮은 세입과목에 대해 부진사유, 대책마련 등 집중 관리
-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계류 중인 경우 세무관리과로 즉시 통보

### □ 채권확보 및 체납정리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조 -- 세외수입팀

- 지방세 체납금 징수기법(국세 환급금, 무체재산권, 회원권, 신탁재산 수익권 압류 등) 전개를 위해 서울시와 업무 협의
- 체납자의 직장조회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 협의
-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여부 및 매출채권 확인을 위해 여신금융협회 업무 협의
- 체납 법인의 휴·폐업여부, 사업장 주소지 확인 등 해당 세무서 업무 협의

첨부 : 2014년 부과부서 세목별 부과·징수현황 1부. 끝.